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증설 원인자부담제외요구



옥삼복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사건개요

신청인(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형재)은 경기도 안산시장을 피신청인으로 환경부장관을 참가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이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신청인에게 요구한 1992. 12. 8.자 원인자부담금(106억4천1백만원) 협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인사실

가. 피신청인은 1992. 9. 28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인가(국고보조금 60% 도비보조금 20%, 시비 20%)를 요청하였으며 1992. 12. 3 총소요자금 중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협의충당한다는 변경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2. 12. 8 환경부로 부터 원인자부담금 방안강구를 조건부로 한 설치승인에 따라 하수도법 제32조 및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원인자부담금 106억4천1백만원의 부담여부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3. 11. 20 의견표명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1993. 12. 18 신청인이 원인자부담대상이라는 것을 통보하였으며, 1994. 4. 4 신청인이 원인자부담불가표명이 있을 경우에는 염색단지에 대한 차집관로계획의 삭제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을 감소시킬 것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1994. 4. 23 부담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함을 재차회신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4. 5. 3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에 관한 부담원칙의 부당함을 전의하였으며 통상산업부도 신청인의 전의를 받아 환경부에 부담금 부과계획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인자부담대상이며 공공하수도부분은 공동하수관리청이 계속 조치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절차에 따라 조치하거나 공공하

수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 염색단지의 공공하수도는 공단조성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설이 아닌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하수도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적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신청인의 용수사용계약량은 55,000톤/일이므로 입주업체 61개사의 전체 용수증가량 20,000톤/일을 추가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량중 공장폐수량의 증설량인 132,000톤/일의 19.4%로 5분의 1미만이다.

(2) 개별입주업체에서 공동폐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공하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비를 부지분양기에 포함하여 안산시에 기부채납하여 재산권과 관련업무를 안산시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설관로의 개축을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없는데도 1992년에 하수도 확장공사시 총공사비의 51%를 신청인이 원인자부담을 하였기에 염색단지내의 하수도는 공공하수도로 볼 수 있고, 안산시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부칙 제4항에도 공공하수도에 폐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폐수처리장의 설치승인시 안산시와 환경부가 염색단지내 공공하수도를 폐수이송관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것은 개별업체이다.

(3) 기설치되어 있는 2개 차집관로만으로도 120,000톤/일 이상을 방류할 수 있으므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별

도의 전용관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4)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992. 12. 31자로 환경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득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을 121,000톤/일에서 385,000톤/일로 증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자금 중 106억4천1백만원(약 10%)을 하수도법 제32조 안산시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에 의하여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인한 원인자부담 협의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여 남부대상에서 제외하라.

나. 피신청인

(1) 하수도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 적용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피혁단지 3,700톤/일이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충분하게 검토한 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색단지의 폐수증가량이 20,000톤/일으로 85,000톤/일이 되며 공장폐수계획량을 186,000톤/일로 조정하더라도 염색단지의 하수증설계획량에 대한 방류량비율은 45.7%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광역상수도 5단계에 공업용수량을 20,000톤/일을 신청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장폐수계획량(206,000톤/일)에는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량은 40,000톤/일의 증설량으로 100,000톤/일로 확장계획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별업소에서 공동폐수처리장까지의 폐수이송관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하거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공공하수도접합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염색단지의 개별업체 폐수이송관로가 안산시 재산이며 공공하수도로 유지 관리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신청인이 원인자에서 배제는 어려운 것이며,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할 때에는 수질보전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원폐수를 방류할 수 없으며, 사설관로를 이용하여 공동폐수처리장까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공공하수도의 접속점은 공동폐수처리장방류구라 할 수 있다.

(3) 별도의 차집관로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준관로가 85,000톤/일 용량이라 하더라도 방류계획량이 100,000톤/일이 되므로 27,500톤/일의 관로용량이 부족하며, 공동폐수처리장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부에 127,500톤/일의 조절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수도기본계획상에도 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 방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폭기조로 바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900mm 정도의 차집관로를 증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참가인

(1)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대상은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수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시점의 계획하수량이 기준이며, 염색단지내 개별업체가 원폐수를 직접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신청인이 공공하수도 증설을 야기시키는 원인자라 할 수 있다.

(2) 개별업소에서 공동폐수처리장까지의 폐수이송관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로 계속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절차에 따라 조치하거나 공공하수도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다.

조사 및 처리결과

가. 쟁점

당사자들이 제출한 관계자료와 조사관의 자료 및 참가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량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5분의 1 이상이 되는 지와 염색단지내의 개별업체의 폐수이송관로가 공공하수도인지와 그리고 공동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의 차집관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나. 조사내용

(1)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량이 증설하수계획량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경기도에 광역5단계용수증량요청(수도 58440-927호 1994. 5. 23)에서 전체공업용수량을 103,000톤/일로 산정하면서 신청인의 염색단지의 공업용수량은 현재 60,000톤/일, 증설량을 20,000톤/일로 하여 총량을 80,000톤/일으로 하였다.

신청인의 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의 실제방류량은 59,454톤(계획량 80,000톤/일)이며, 설치인가받은 하수처리장의 공장폐수계획량은 206,000톤/일(하수계획량 385,000톤/일)이므로 공동폐수처리장의 방류량이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하수계획량의 5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염색단지내 개별업체의 폐수이송관로가 공공하수도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폐수이송관로에 폐수를 방류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

출기준이 하이어야 하므로 원폐수방류는 불가하며 사설관로를 이용 공동폐수처리장까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이나 폐수이송관로가 사설관로라면 원인자부담을 할 수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1988년 공공하수도 확장공사시 6억원, 1992년에 공공하수도 확장공사시 총공사비의 51%인 10억2천만원을 신청인에게 원인자부담하였기에 개별업체의 폐수이송관로를 공공하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위 폐수이송관로는 1981년 반월공단을 조성분양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비를 부지분양가에 포함하여 전액부담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피신청인의 재산이며 공동하수도관리청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폐수이송관로를 공공하수도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수도사용료를 염색단지

개별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은 용수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아니며, 개별업체가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기 전에 중간공정단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자이므로 하수량증가의 원인자로 볼 수 없다.

(3) 공동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의 차집관로의 설치필요성에 대하여는 공동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기설치되어 있는 2개 차집관로만으로는 공동폐수처리장의 폐수량이 80,000톤/일로 증가하게 되면 현재의 염색단지의 차집관로용량인 70,000톤/일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별도의 전용관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1992. 12. 8 106억4천1백만원의 원인자부담 협의요구는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염색단지의 방류계획량이 증설하수계획량의 5분의 1이상이라 하더라도 염색단지내 개별업체의 폐수이송관로가 공공하수도이므로 공공하수도가 접속되는 여기에서는 5분의 1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다.